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톱킹범죄 정의 변경 및 보복스토킹범죄 신설 〉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31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해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스토킹범죄의 유형과 처벌	5
3. 스토킹범죄 정의 변경	8
4. 보복스토킹범죄 신설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8. 25.
3. 회 부 일: 2025.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만한 심리·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거나 재차 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2차 피해 발

생 등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는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준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8조제4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요소인 반복성에 대한 정의에 6개월 내에 스토킹행위가 재차 행하여진 경우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안 제2조 제2호), 피해자등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보복스토킹범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반복적(스토킹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u> ----- -----. <u>2의2. “보복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u>

3. · 4. (생 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 ② (생 략) <u><신 설></u>	3.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스토킹범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④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	--

2. 스토킹범죄의 유형과 처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 범죄로는 스토킹범죄와 그 밖에 법률상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나 법원이 부과한 잠정조치의 위반행위 등이 있음(제18조 및 제20조).¹⁾

○ 이 중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의 특유한 범죄로서, 같은 법의 스토킹 행위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1)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처벌법은 일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 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지속 또는 반복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행위임.

○ 동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그 동거인, 가족 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등에게 일정한 물건 등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임(제2조제1호).²⁾

○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게 됨(제2조제2호).³⁾⁴⁾

2)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그 방법을 기준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법정형을 달리 하고 있음.

○ 단순히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제18조제1항).⁵⁾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특수스토킹범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제18조제2항).⁶⁾⁷⁾

3)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5)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스토킹범죄의 정의 변경

가. 검토의견

□ 안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의 정의 중 ‘반복적’의 의미가 최초의 스토킹 행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차 스토킹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과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⁸⁾ 범죄구성요건의 변경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 다만, 범죄에 관한 규정은 처벌 대상인 행위와 형벌을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하고(명확성의 원칙),⁹⁾ 그 밖에 책임주의원칙 등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구성요건의 변경 시 이러한 기본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8)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2헌바85 등.

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 현행법 해석상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이란,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 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¹⁰⁾ 안 제2조제2호는 이 중 시간적 근접성에 관한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음.

○ 안 제2조제2호 중에서 실질적 개정사항인 괄호 부분은 ① 스토킹 행위 간의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의 한계(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②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 간에는 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으며, ③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스토킹행위 간에는 장소적 연관성이나 범의의 단일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도 스토킹범죄로서의 반복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소지도 있을 것임.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각각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지, 그 경우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형사법체계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0) 주 5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참고.

나. 관계기관 의견

- 경찰청은, 현행법상 지속성·반복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반복’의 개념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으므로, 시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4. 보복스토킹범죄 신설

가. 검토의견

□ 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8조제4항은 보복스토킹범죄를 신설하고 그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는 보복스토킹범죄의 태양이나 피침해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9제2항11)에 따른 보복범죄와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겠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보복스토킹범죄의 대상을 특가법 제5조의9 등과는 달리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11) 특가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④ (생략)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략)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③ (생략)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③ (생략)

법률에 반영할 경우 보복대상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73
